

# 『죽도도해일건기전(竹嶋渡海一件記全)』

## 을 통해 본 도해와 밀무역\*

— 에도시대 상인 이마쓰야 하치에몬의 도해사업 —

권 정\*\* · 권 오 엽\*\*\*

(e-mail : shirijung@hanmail.net · dongšana@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도해의 경제성    |
| 2. 연구사           | (1) 하치에몬의 항해  |
| 3. 하치에몬의 송도·죽도인식 | (2) 번주와 하치에몬  |
|                  | (3) 죽도산물의 수익  |
|                  | (4) 하치에몬의 밀무역 |
|                  | 5. 결론         |

キーワード：八右衛門(HACHIEMON), 竹島(TAKESHIMA), 松島(MATUSHIMA), 密貿易(smuggling), 竹嶋渡海禁止令(A law forbidding go over to Takesima)

## 1. 서론

에도막부(江戸幕府)는 1836(天保7)년 12월 23일, 세키슈하마다번(石州浜田藩) 카이센(廻船)상인 이마쓰야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을 죽도(현재의 울릉도)에 도해한 죄로 처형하고, 다음해 2월 금제(禁制)를 선언했다.<sup>1)</sup>

1696(元禄9)년에 내려진 죽도도해금지령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런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제1저자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부교수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1) 既異国之属島江渡海 いたし、立木等伐採持帰ル始末 御国体江対し不輕義不届ニ付死罪申付浜田藩竹島密航事件、都而異国渡海之義者重キ御禁制候条、向後右島之義も同様相心得、渡海致れ候 『幕府評定所判決文及び触書』国立公文書館, 内閣文庫, 蠡余一得4集卷5

데 이 금지령에 송도(현재의 독도)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의 독도인 송도는 그 금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일본 측 견해도 있다.<sup>2)</sup>

이러한 주장은 송도도해를 가장해 죽도에 도해하라는 하마다번주(이하 번주)의 지침을 받았다는 하치에몬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금령이 내려진 당시의 산인(山陰)지역의 인식을 간과한 것이다. 죽도도해는 번의 재정 조성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하치에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 제안을 받은 하마다번의 에도번저(江戶藩邸)는 막부에 문의하여, 죽도가 일본의 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송도로 도해한다는 명목 하에 하치에몬은 죽도로 도해했고, 결국 국법위배로 처형된 것이다.

1837년 발간된 『죽도도해일건기전(竹嶋渡海一件記全)』(이하 『일건기』)은 하치에몬의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1832년까지 죽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과, 1833년에 단 한 번 도해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도해원을 제출한 사실 자체가 죽도를 타 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죽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었고, 하치에몬 자신이 제작했다는 지도(繪圖) 사본에 3년 연속으로 죽도로 도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죽도도해는 산물의 채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하치에몬은 산물의 채취로 번의 재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도해의 목적이 산물채취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행이 18일간 죽도에 체류하며 수확한 것은 목재 4, 50본과 인삼 16뿌리, 약간의 어획물이었다. 이도 난풍으로 대부분 바다에 방기하고 목재 16그루와 풀 3뿌리만을 반입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수확물을 위해 번주와 번이 국법을 어기고 죽도도해를 모의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하치에몬은 죽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계속적인 죽도도해를 요구했다. 하치에몬이 체포되는 1835년까지 죽도로 도해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의 요구는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죽도도해를 허가한 번의 속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수확물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텐포잡기(天保雜記)』 등이 언급하고 있는 밀무역<sup>3)</sup>이었을 것이

2) 川上健三(1996) 『竹島歴史地理学の研究』 古今書院, p.191. 권오엽 역(2010) 『日本の 独島論理』 백산자료원, p.198.

3) 竹嶋と申嶋濱へ田料沖合之島ニ而無人島ニ而朝鮮向寄之嶋ニ候所右島ニ而日本之刀劔類を漁獵船へ積込ニ

다. 『일건기』에도 역시 밀무역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죽도로 떠나는 하치에몬에게 번의 가신이 무기류를 건넸다는 내용과 귀범한 선원들이 신원불명의 상대에게 선종의 무기류를 매각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에도에서 구매한 무기류를 번의 운송체제를 통해 죽도로 운반해 이국인과 거래했다는 『텐포잡기』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이처럼 죽도도해는 산물 채취뿐 아니라 무기류와 같은 물품거래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도로 도해한다는 명목 하에 번주와 번이 하치에몬의 죽도도해를 묵인한 것은, 이러한 밀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였다.

## 2. 연구사

1872년 7월 14일자 『동경니치니치신문(東京日々新聞)』을 보면, 하치에몬을 죽도개간과 외국선과의 밀무역(密商)으로 처형당한 자로 소개하며, 죽도 개발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sup>4)</sup> 국법을 위배한 죄인이 아니라 개척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어갔다. 일본이 1905년 현 독도인 량코도를 죽도로 개명하여 시마네현(島根県)에 편입시킨 이듬해, 시마네현은 사무관 진자이(神西由太郎)에게 죽도와 울릉도 시찰을 명했다. 그 시찰단의 일원인 오쿠하라(奥原碧雲)는 하치에몬을 대담강인(大胆剛毅)하고 모험심이 풍부한 자로 기록하며, 그의 죽도도해를 허락한 번주를 칭송하고 반면 그를 처형한 막부는 매도하고 있다.<sup>5)</sup> 국법을 어긴 하치에몬을 해외웅비(雄飛)의 선구자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하마다에서도 하치에몬을 번의 재정을 구하고 지방경제를 살린 해걸(海傑)로 추

漁船之姿ニ而異国人と交易を致候由刀劍ハ江戸并諸方ち買集道中筋ハ濱田用物之会符を用候由  
『天保雜記18』 内閣文庫御所藏

4) 旧政府の律密商の刑に行せられしが方至今仁寛大の秋に際し其子孫を召出され同所を開拓せらる々由不日速に開拓ならば必ず国家の大益となるべき也。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教育委員会, p. 4.

5) ああ、海国の冒険児八右衛門は、有為の企図を抱きて空しく刑場の露と消江、英主松平周防守また永蟄居の身となる。世を挙つて昇平無為に馴れ、凡庸徒らに跋扈するの時幕府は更に全国一般に命令を下して、対外的発動の萌芽を根底より芟除せんと企てたり

권오엽 역주(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 pp.77-80.

양하며 송덕비를 세웠다.<sup>6)</sup> 하치에몬은 해결로 추앙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도(현재의 독도)영유 분쟁이 발생하자 카와카미(川上健三)는 하치에몬의 죽도도해를 근거로 하여, 1696년과 1836년의 죽도도해금령에 송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sup>7)</sup> 이후로 금령에 송도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1837년 어촉서(御觸書)의 죽도는 「겐로쿠기에 조선국에 넘긴 이래, 도해정지를 명하신 장소에 있다」<sup>8)</sup> 라는 기술에 반하는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겐로쿠·텐포기의 금령이 내려진 당시의 사회인식을 고려해 볼 때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1693년 오야가(大谷家) 어민들이 죽도에서 조선인 들을 연행함으로써 발발된 영토분쟁이 3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막부는 죽도에서의 양국어민들의 공동 어업을 제기했으나 쓰시마번이 이에 난색을 표했다.<sup>9)</sup> 그러자 막부는 1695년 12월 24일, 돗토리번(鳥取藩)의 에도번저에 「인슈(因州)·하쿠슈(伯州)에 부속된 죽도는 언제부터 양국에 부속된 것인가. 선조가 영지를 배령하기 전부터인가 아니면 그 후의 일인가」 등이 포함된 7개 항을 서면으로 질의했다.<sup>10)</sup> 그러자 에도번저는 다음 날, 죽도는 인슈·하쿠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 죽도와 송도는 물론 그 외에도 양국에 부속된 섬이 없다는 등의 9개항을 답변하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민만이 죽도에 도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sup>11)</sup>

6) 郷土ノ生メル快男子清助の子海傑八右衛門(중략)藩ノ財政ヲ救ヒ地方ノ經濟ヲ潤ホス偉ナル哉

7) 전개서, 川上健三(1996), p.191. 전개서, 권오엽 역(2010), p.198.

8) 元祿之度朝鮮國江御渡シニ相成リ候以來渡海御停止被仰出候場所ニ有之

9) 唯今迄日本より数年渡リ來候事ニ候間日本より者弥可相渡候間彼方より罷渡候ハ、其通ニ与何となく被仰遺急度無之様被成可然存候然上者輪番之僧別而罷下候ニも及申間敷与存候  
권정·오니시편역주(2012) 『죽도기사』 3-2, 한국학술정보, p.185.

10) 因州、伯州江付候竹嶋はいつの頃より兩國江附属候哉。先祖領地被下候以前より之儀候哉。其後より之儀候哉事(問)。竹嶋は因幡・伯耆附属ニては無御座候。伯耆国米子町人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と申者渡海漁仕候儀、松平新太郎領国之節、以御奉書被仰出候旨承候。其以前渡海仕候儀も有之様ニは及承候得共、其段相知不申候事(답1)・竹嶋松嶋其外兩國江附属之嶋無御座候事(答7)  
권오엽 편역주(2012) 『죽도지서부』, 지성인, p.55, p.77, p.87.

11) 同年正月廿三日、松平伯耆守留守居召寄相尋候處、段々書付を以伯耆守より被申候。覺、松平伯耆守。(第一条)伯耆国米子之町人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船子共より外者領国之者竹嶋江渡海候仕候儀成不申候、尤他領之者渡海之儀猶以成不申候、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儀者先年より竹嶋渡海之儀御免被遊罷越ニ付外より參候儀者決而無御座候、右之船子共竹嶋江獵ニ罷超候節、出雲国隱岐国獵師共雇候而米子之船子同船ニ罷越候、人数者年々相違御座候、出雲国よりハ不參儀旨御座候、大形ハ出雲国より二三人、隱岐国より八九人程も雇候而罷越候由ニ御座候。(第二条)松嶋ハ何れ之国江付候嶋ニ而も無御座候由承候。(第三条)松嶋江獵ニ參候儀、竹嶋江渡海之節道筋に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他領より獵ニ參候儀ハ不承候、尤出雲国隱岐国之者ハ米子之者共と同船ニ參り候。(第四条)伯耆国米子より出雲国雲津まで道程拾里程。(第五条)出雲国雲津より隱岐国焼火山迄道程式拾三里程。(第六条)隱岐

그러자 막부는 1월 26일 마쓰에번(松江藩)에 질의하였고, 역시 오야·무라카와 고용의 어민들만이 도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sup>12)</sup> 송도와 죽도가 돛토리번의 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하는 금령을 내렸다.<sup>13)</sup> 죽도도해금지령에 송도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금령을 어긴 하치에몬의 처벌에 앞서 막부는 쓰시마번에 질의하여 송도역시 죽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도해가 금지된 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sup>14)</sup> 겐로쿠기와 달리 돛토리번이 아닌 쓰시마번에 질의한 것은 당시 조

国焼火山より同国福浦まで七里程。(第七条)福浦より松嶋迄八拾里程。(第八条)松嶋より竹嶋迄四拾里程。(第九条)松嶋より朝鮮国江者八九拾里程も御座候様ニ承及候、已上。正月廿三日「磯竹島覚書」、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池内敏(2012)『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p.320

12) 同年正月廿六日、松平出羽守留守居召寄相尋候処、書付を以返答申来。口上覚、松平出羽守。(第一条)雲州隠州之者爲自分働磯竹江致渡海候之儀不及承候、乍然隠州近年之様子不存候。(第二条)伯州米子町人村川市兵衛・大屋九右衛門雲州雲津浦より直ニ磯竹江者不致渡海、隠岐国迄乗船、彼地より磯竹江渡海仕候由承候。(第三条)竹嶋之儀雲州ニ而者磯竹と申候事。(第4条)雲州隠州より磯竹江海路難所ニ而候故、右兩國之者米子之者ニ同船仕參候儀望不申得共、市兵衛九右衛門船子共々雇申候付罷超候事(第五条)右之通候故、自分として磯竹江渡海之義決而無之候、乍然隠州之儀者近年御代官所ニ成候故、委細不存候事。(第六条)委細之儀御尋被遊候者、国元江申遣、吟味可仕候、已上。正月廿日六日松平出羽守。「磯竹島覚書」、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전계주10, p.320, p.321.

13) 先年松平新太郎因州伯州領知之節相窺之伯州米子之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竹島江渡海致于今雖致漁候向後竹島江渡海之儀 制禁可申付旨 被仰出候付  
권오엽 · 오니시편역주(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한국학술정보, p.201, p.131.

14) 元禄年中因州より朝鮮国竹嶋江渡海之儀に付、先祖對馬守江訳有之、御答申上候ニ依、公儀より被仰出之御旨も有之候処、近年石州之者隠岐国より右竹嶋江罷渡、品替等仕候哉之段御聞届ニ相成、敵敷御吟味中ニ付、去月十七日、私共御呼出被成御尋之条々之内、先左之通り御答申上候、竹嶋之周經二十里斗、其手前ニ松嶋と申す小島有之、周經四五里と相聞、竹嶋とハ四拾里も相隔、別而日本地ニ近嶋之故ニ候、右二嶋都而朝鮮之蔚陵島ニ候哉。又者竹嶋者蔚陵島ニ而松嶋と申ハ朝鮮外之地ニ候哉、二島共ニ無人島之由、弥左様候哉、石州より乾ニ当、対州よりハ何之方角ニ当候哉、遠近里数且日本・朝鮮より右嶋江遠近里数、対州より相見候哉、右嶋江相渡候哉と之御事、承知仕候、朝鮮江原道蔚珍県之東海中ニ蔚陵島と離島有之、日本ニ而竹島と相唱申候、被国ニ而者地方拾里余と相見候得共、伝説ニハ周經四五里と相聞、路程朝鮮より者四拾里余、因幡・伯耆邊より百四五十里程有之と相聞申候、対州よりハ良ニ当、路程百里余も可有之哉、至而難海ニ而、是迄対州之者罷渡候儀無之候、尤天氣清明ニ候得者、朝鮮渡口より竹島之由ニ而否ニ相見申候、松島之儀、元禄年間老中阿部豊後守様より御尋之節、竹島近所ニ松島と申嶋有之、此所江も日本人罷渡漁仕候段下々之風説ニ承候段御答申候由、留書ニ相見申候、竹島同様日本人罷渡致漁候儀御停止之嶋とハ被考候得共、差極候儀者御答仕兼候、朝鮮地図を以相考候得者、蔚陵・于山二島有之と相見申候、右竹島江彼国漁民共罷渡、且木材多島と相聞候付、為舟造罷渡候由ニ而住居之者ハ無之由ニ御座候、尤彼国役人時々為見分致渡海候と相聞申候、尤も当時ハ如何ニ候哉、差極候儀難申上候、朝鮮国之絵図符合可有之候間差上候様、且彼国之体勢心得候者詰合候ハハ致同伴候様被成度、名前申出候様と之御事、承知仕候、以前より持來之絵図體ニ者、其尽差上申候間、御用相濟候ハハ御下可被下置候、且又朝鮮之儀者言語不通ニ付、通弁訳之者直談談話も相成、彼国体勢も委敷候得共、御当地江詰合不申候、尤御用向之儀、私共江御尋被下候ハハ品ニ依り心得候儀者御答も可仕、心得兼候儀者、引取、吟味取調御答候様仕度御座候『大韓民国国史編纂委員会所藏對馬藩政史料』古文書目録 4013号. 전계주, 권오엽(2012), p.335.

선외교를 쓰시마번이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금령이 겐로쿠기의 금령과 다른 점은 선포방법과 그 선포영역이다. 겐로쿠기의 금령은 오야·무라카와 양가 거주외의 돗토리번에 한정되었지만, 덴포기의 금령은 전국에 고시되었다. 그 금령의 의미를 이케우치(池内敏)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8세기 초에는 관민 모두가 죽도(울릉도)·송도(독도) 쌍방에 대한 도해금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덴포기의 금령에도 송도(독도)도해를 금하는 문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겐로쿠기의 금령을 근간으로 발령된 이상, 이 금령에도 일본인의 송도(독도) 도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sup>15)</sup>

이케우치는 죽도도해금령에 송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며, 울릉도와 무관하게 송도로만 도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6)</sup> 죽도도해금령에 송도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쟁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sup>17)</sup>

하치에몬의 도해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통성을 보장한다는 일본 측 주장에 반론하는 한국 측 연구로는 2016년에 발표된 송휘영의 논문을 들 수 있다.<sup>18)</sup>

### 3. 하치에몬의 송도·죽도인식

하치에몬이 죽도(울릉도)를 송도(독도)로 착각하였다면, 도해 전후 죽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하는데, 죽도에 상륙한 후에도 「모든 것이 추찰한 대로」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9)</sup> 상륙한 죽도는 초목이 무성하고, 어패류가 풍부한 섬이었다.<sup>20)</sup> 하마다에서 7,80리 떨어진 곳에 송도가,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죽도가

15) 池内敏(2016) 『竹島』中公新書, p.106.

16) 전계서, 池内敏(2016), p.107, p.108.

17) 江戸時代の日本図 상의 죽도(울릉도)·송도(독도)의 기재 유무, 彩色의 유무를 근거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兩島를 모두 기재했을 경우, 모두 同色으로 칠하거나 無彩色일 뿐, 한쪽만을 彩色하거나 兩島가 다른 색으로 칠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양도는 항상一括해서 취급되는 존재였다. 池内敏 『竹島』中公新書, 2016年, p.145.

18) 송휘영(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본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日本文化學報』 제6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6.

19) 上陸いたし嶋方見請候処前以推察之通人家無之空嶋ニ而(인용하는 『竹嶋渡海一件記全』은 권오엽과 大西俊輝가 편역주 중이며, 大西俊輝의 의견에 따라 전체를 29단으로 나누었다)

20) 前以推察之通人家無之空嶋ニ而絶而渡海いたし候者も無之与相見草木繁茂いたし足の踏所も 無之鷲鷹之

위치한다 했는데, 이는 송도도해 경험에 근거한 인식이 아니었다.<sup>21)</sup>

하치에몬은 1830년 7월 이전에 번에 죽도산물의 채취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도해를 소원하였고,<sup>22)</sup> 1831년 7월에는 에도번저에 같은 제의를 하며 수익에 따른 세금을 바칠 것을 약속했다.<sup>23)</sup>

번주는 죽도(울릉도)가 일본의 섬이 아니며 도해가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 송도(독도)로의 도해로 가장하는 방법을 제안했고<sup>24)</sup>, 번의 가로들 역시 송도도해를 가장하고 죽도에 도해할 것과 그 사실이 누설될 경우에는 표류로 가장하라는 지침까지 교사했다.<sup>25)</sup>

1833년 7월 21에 죽도에 상륙한 일행은 소지한 첩포로 새와 강치를 포획하는 것을 시작으로, 18일간 채류하며 산물을 채취했다. 전복과 같은 어패류를 식용으로 하면서 목재 50그루와 인삼으로 보이는 풀뿌리 16개를 채취했다.<sup>26)</sup> 이는 『長生竹島記』<sup>27)</sup>와 『竹島考』에 기술된 산물과 유사하다.<sup>28)</sup>

鳥類數多飛廻磯際より地先へ懸鮑其外魚類眼を見余り候程夥數寄集罷在海中よりハ胡須与唱其形牛如し獸物追々遊上り又者山手より者鷺之形ニ而大サ鶴程も有之鳥飛來人躰を見請鶯候哉可飛掛勢ニ付(21단).

21) 『竹島考』는 雲津와 隱岐의 18리, 隱岐와 松島の 70여리, 松島와 竹島の 40여리라 했고 『長生竹島記』는 三保関와 隱岐를 20리, 隱岐와 松島를 170리, 松島와 竹島를 90리라 했다.

22) 右嶋江渡海之上草木伐出漁業ニ而もいたし候ハ、自己之徳用者不及申莫太之御国益ニも可相成与心附渡海願取方之儀寄ニ致勸弁罷在候(3단)

23) 以右嶋渡海之儀私江被差免候様相成候ハ、周防守様御勝手助成筋ハ勿論第一御国益之一番ニ付(5단) 自己之徳用而已ニ無之莫太之御国益ニも可有之ト見込右ニ付周防守様へ冥加銀差出(6단).

24) 何レ之国地とも難差極手入等は不可然旨候 竹嶋之儀者日本之地共難差極候付渡海目論見相止可申段申來候付(8단).竹嶋之方相止松嶋之方渡海いたし試可申分被仰聞候趣三兵衛(浜田藩勘定方橋本三兵衛)申聞候付松嶋之儀者小嶋ニ而見込無之候得共江戸表へハ右嶋之名目残以竹嶋へ渡海いたし試(9단). 何レ之国地とも難差極手入等は不可然旨候、竹嶋之儀者日出之地共難差極候付渡海目論相止可 森須和男(2014) 『浜田藩と天保竹島一件』, 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 p.5.

25) 竹嶋之方相止松嶋之方渡海いたし試可申分被仰聞候趣三兵衛申聞候付松嶋之儀者小嶋ニ而見込無之候得共江戸表へハ右嶋之名目残以竹嶋へ渡海いたし試万一外ニち相洩候時ハ漂流之姿ニ申唱候ハ、子細有之間敷与存候旨三兵衛へ申聞置候処(9단).

26) 鳥獸威之ため邊之草木伐取昼夜無絶間簞を焚置磯邊之鮑 其外魚類を取日々食用いたし猶思々船中ニ有之鎌斧鉞等を持追々上陸繁茂之草木を伐払道を開奥深く山手へ入込候ニ随人參ニも可有之与見込候草拾 五六株程見込候付堀取候儀ニ而右嶋一凶樹木者樛桑杉椈其外雜木ニ而是又思々ニ木數都合四五拾本斗伐取夫々船へ積入嶋之次第私自筆ニ而絵図ニ写取素ら谷間ニ者潔水も有之右躰有益之地ニ無紛相見候ニ付(22단).

27) 目当てハ串鮑生海鼠海驢の油を取り樽詰にして帰る

권혁성 · 오니시 편역주(2016) 『장생죽도기』, 제이앤씨, p.105.

28) 専トセル産物ハ鯨海鹿ノ兩種ナリ(중략) 五葉ノ松黃葉梅椿ケヤキ桐竹<以上同上>人蔘<本邦ニテ常ニ用ユルモノノ類ニシテ葉ノ切細ク花ハコゴメ花ニ似タリト云云今按某種ニテハコレ無ク胡蘿蔔類ナラン>梅檀タタラ<葉バンノ木ノ如ク恐クハ楠ニ似テ大木アリ>マノ竹<箭筈竹ニ似テ大サ三四寸廻リノモノアリ

권혁성 역(2013) 『죽도고』, 인문사, p.287, p.301.

하치에몬은 송도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에도번저에 제출한 내존서(內存書)에 하마다 해안에서 북방 7,80리 해상에 사람이 살지 않는 송도라는 소도가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9)</sup>, 죽도에 왕래하던 중 선상에서 발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송도는 죽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 산물이 없는 돌섬이었기 때문에<sup>30)</sup> 하치에몬은 상륙하지 않았다.<sup>31)</sup> 또한 하치에몬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데, 1833년 이후에 도해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본인이 작성했다는 지도에 기재된 1834, 1835년 도해기술과 다르다.<sup>32)</sup>

죽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1882년에 비로서 알게 되었다는 진술 역시 그렇다. 도해원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죽도를 쇄국령이 미치는 공간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죽도는 조선의 속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1801년 편찬된 『장생죽도기』에는 막부의 위엄을 빌려서라도 조선의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술이 있고<sup>33)</sup>, 1828년에 편찬된 『죽도고』에는 조선에 내란이 발생하면 재빨리 수복해야 한다는 기술이 있다.<sup>34)</sup> 당시의 죽도에 관한 인식을 하치에몬이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4. 도해의 경제성

### (1) 하치에몬의 항해

하치에몬은 1830년에는 에치고노쿠니(越後国)의 연공미(年貢米)를 에도에 운반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고<sup>35)</sup>, 1832년에는 다이마산(大麻山)의 목재를 매출하

29) 竹嶋之外ニ松嶋与唱石見国海岸ち子之方ニ当リ海上七八拾里斗相隔候小嶋有之右松竹兩嶋とも全空嶋与相見其俣被差置候(6단).

30) 隨子之方へ沖走いたし松嶋地先をも罷通り候節船中ら見受候処果而小嶋ニ而樹木等も無数更ニ見込無之場所ニ付態々上陸不致其俣乾之方へ乗廻(20단).

31) 松嶋地先をも罷通り候節船中ら見受候処果而小嶋ニ而樹木等も無数更ニ見込無之場所ニ付態々上陸不致其俣(20단).

32) 石州浜田の町人金屋清右衛門(金清=今津屋八右衛門)は天保四年(1833)、五年(1834)、六年(1835)の三度の渡海したと書込みがある。森須和男『浜田藩と天保竹島一件』, 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 2014年, p.56.

33) 声鳴かハす虎の威を受けて千里の渡海船我朝なれ哉竹島の往来絶せぬいかり綱

전계서, 권혁성·오니시 편역주(2016), p.299.

34) 彼国モン内乱起テ三韓時代ノ如分割スル与 (中略) 速ニ是ヲ収覆スルノ計議アル可 전계서, 권혁성(2013), p.265.

려 했다. 1833년에는 오사카(大坂)에서 구입한 술을 초슈(長州)에서 매각하고<sup>36)</sup>, 죽도 산물을 반입하기도 했다.

연공미를 운반하는 회선은 에치고(越後国)에서 북으로 가는 진로를 택하여 토비시마(飛島)를 거쳐 쓰가루(津軽)반도, 시모키타(下北)반도를 돌아 태평양 쪽의 산리쿠(三陸)해안으로 남하한다. 당시 마쓰마에(松前)로 가는 회선들이 폭풍을 만나면 송도와 죽도 사이를 지나기도 했으나<sup>37)</sup> 하치에몬이 죽도에 가는 항로는 하마다를 떠나 오키(隱岐国) 후쿠우라(福浦)에서 순풍을 기다렸다 송도(독도)를 거쳐 죽도(울릉도)로 가는 항로였다.

하치에몬이 소유했던 배는 에도에서 폐선 시킨 것과 오사카에서 새로 제작한 신토우마루(神東丸) 2척이었다. 연공미 운반선을 1831년 7월에 폐선했기 때문에, 11월의 귀항은 육로였다. 이듬해 7월18일의 귀로는 새로 제작한 신토우마루를 타고 히로시마에 가서, 그곳부터는 육로로 귀환했다. 따라서 하치에몬은 1831년 7월부터 1832년 7월까지 1년간은 배를 소유하지 않았다. 야마가타현(山形県) 토비시마(飛島)의 『오카쿠센히카에초(御客船控帳)』의 1807년과 1817년조에는 부친 키요스케(今津屋清助)를 선주로 하는 신후쿠마루와 신토쿠마루의 기록이 있다. 하치에몬이 새로운 선박을 신토우마루로 명명한 것을 보면 선박의 호칭인 「神〇丸」은 가문의 전통으로 판단된다.

## (2) 번주와 하치에몬

죽도도해는 하치에몬의 제안이 계기가 되었으나, 도해의 진행은 번주와 번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번과 번주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번은 잦은 화재나 수재로, 번주는 출세에 따른 출비로 재정이 어려웠다.<sup>38)</sup>

번주인 마쓰다이(松平周防守家) 가문은 하마다로 전봉될 때부터 고정된 지출 외에 막부의 어용(御用), 참근교대(參勤交代), 혼례, 화재, 수재, 영지교체(領地交替)에 따른 유동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출세가도를

35) 『竹嶋渡海一件記全』 4단

36) 差入銀壺ノ目利付之相對を以備受候上当表酒商人ノ酒式拾樽積いたし大麻山立木(중략) 申談長州上之関或者赤間関ニおゐて積込之酒追々ニ不残売払売(중략) 立木払出之儀被聞届候付山方及見一旦帰坂いたし 『竹嶋渡海一件記全』 14·15단

37) 전개서, 권혁성·오니시 편역주(2016), p.75.

38) 森須和男(2002) 『竹嶋一件考-竹嶋一件の前段階』, 浜田市文化財愛護会編 19号, p.31.

달리던 번주는 승진에 따른 출비가 컸다. 그는 1817(文化14)년에 지사부교(寺社奉行), 1822(文政5)년에 오사카쵸다이(大坂城代), 1825(文政8)년에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와 같은 중임을 역임하였고, 1826(文政9)년에 로주(老中)로 취임했다. 로주수장(老中首座)인 미즈노(水野出羽守忠成)의 후원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가, 1834(天保5)년에는 미즈노의 사망으로 로주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출세과정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미즈노타다쿠니(水野忠邦)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즈노는 로주로 승진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동원했는데, 그것은 번주 마쓰다이라(松平康任)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sup>39)</sup> 승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느라 번의 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 역시, 미즈노가 100량 이상의 국익이 되는 계획이 있으면 상신하라고 포달한 사실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하마다번은 죽도도해 계획에 참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곤란했다.<sup>40)</sup> 때문에 죽도산물 채취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하치에몬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번주는 죽도(울릉도)가 일본령이 아니므로 그곳으로의 도해 대신에 송도(독도)로 도해하는 사업을 시도하라고 지도했고, 번은 송도에서는 이윤을 얻을 전망이 없으니 송도로 도해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죽도로 도해할 것과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표류를 가장하라는 방법까지도 교사했다.<sup>41)</sup>

이러한 일련의 범법행위는 로주로 막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번주의 자신감, 즉 문제가 발생해도 무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7세기의 로주들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지는 도해사업에 관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고관(高官)으로 불리는 로주들은 주인장의 발급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사업을 조절하려 했고,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한 네덜란드 상관은 나가사키에서 출범하는 중국인 명의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고관들로 보았다. 고관들은 주인장 발급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황제의 명령에 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sup>42)</sup> 편법적인 방법으로 죽도도해를 교사하는 번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39)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p.46.

40) 전계서, 森須和男(2002), p.46.

41) 竹嶋之儀者日本之地共難差極候付渡海日論見相止可申段申来候付(8단) 竹嶋之方相止松嶋之方渡海いたし試可申分被仰聞候趣三兵衛申聞候付松嶋之儀者小嶋ニ而見込無之候得共江戸表へ右嶋之名目殘以竹嶋へ渡海いたし試万一外ニ相渡候時ハ漂流之姿ニ申唱候ハ、子細有之間敷与存候(9단).

42) 朝尾直弘(2004) 『朝尾直弘著作集』第5권, 岩波書店, p.202.

하치에몬의 제안으로 죽도도해가 행해진 시기는 번주 마쓰다이라가 로주에서 로주수장에 오르기 직전, 즉 권력의 정점을 눈앞에 둔 시기였기 때문에, 출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최우선이었다. 때문에 죽도산물 채취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번주와 번은 송도도해를 가장한 죽도도해를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 (3) 죽도산물의 수익

죽도도해로 부와 권세를 구축한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에도성 공사에 재물을 헌상하여 의복을 하사받기도 하고<sup>43)</sup>,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요로에 헌상하며 도해권을 유지했다.<sup>44)</sup> 양가의 번성이 죽도도해 덕분이었음은 도해 금지와 함께 양가가 쇠락한 사실로 알 수 있다.<sup>45)</sup> 도해가 금지되자 무라카와마사카쓰(村川正勝)는 에도에 상주하며 도해재개를 탄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을 얻어 낙향했고,<sup>46)</sup> 오야카쓰후사(大谷勝房)도 5년 간 에도에 체류하며 탄원했으나 가산만 탕진하고 낙향하여 급사하였다.<sup>47)</sup>

여기서 양가의 축재가 죽도 산물의 채취만으로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1682(天和2)년 무라카와마사키요(村川政清)가 성주에게 죽도도해만으로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양가는 년 1, 2척의 배를 죽도에 파견하여 수익을 양분하였고<sup>49)</sup> 말기에는 선박을 양가가 년 1회씩 파견했는데, 그런 수익만으로는 장군가와 막각을 비롯한 세력가들과 교류할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다.

43) 寛永十五年西之御丸 御材木御用被為仰付 難有奉畏入 寅二月右御用木為献上 市兵衛九右衛門兩人共ニ参府 則御目見被為 仰付首尾能相勤兩人共御時服奉拜領仕(권오엽·오니시토시테루번역주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上』 한국학술정보, 2011, p.109). 竹島梅 檀可差上旨被為仰付候之處首尾能献上仕候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0) 『竹島關係資料集第一集』, p.85.

44) 來春竹島江船被為相渡候旨無事着岸之左右可承候 材木之儀 兩人江之書狀申遣候 권오엽 번역주(2012) 『오야가고문서』, 인문사, p.135.

45) 전개서, 池內敏(2016), p.80.

46) 元禄拾年丁丑八月正勝江府江罷下(省略) 乍恐御嘆願差上相詰罷存候處、不斗病氣ニ取□□志願不達罷歸候事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0) 『竹島關係資料集第一集』, 近代地方文書, p.93.

47) 勝房 急病ニ而死去 因茲万事道絶 尚身代表微仕 微力ニ而 江府相詰御愁訴申上候儀モ不相叶 及中絶候 권오엽·오니시 번역주(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하, 한국학술정보, p.283.

48) 竹島渡海中勝手不行届儀も有之、乍恐其段奉御断仕候處、天和二年戌十二月十一日御城主方寿院様御墨附を米子入津之塩口錢、市兵江自今以後為家祿可被為下置旨被為仰付 전개서, 島根県総務局総務課(2010), p.91.

49) 池內敏(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p.261.

오야가는 1671년 죽도전복을 장군에게 500패, 7인의 로주에게 500패씩, 2인의 와카로주(若老中)에게 30패씩, 3인의 봉행에게 300패씩, 총 5,500패를 헌상하고 있다. 1678년에도 장군에게 500패, 6인의 로주에게 각 500패씩, 2인의 와카로주에게 300패씩, 총 4100패를 헌상하고 있다.<sup>50)</sup> 전복뿐 아니라 해산물과 목재, 솜, 초, 장식품 등을 헌상했는데, 이러한 헌상은 돛토리번을 비롯한 지역 관리들에게도 이루어졌다. 이는 무라카와가도 마찬가지였다.<sup>51)</sup>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이처럼 충실히 헌상했기 때문에 1625년에 받은 면허로 1696년 1월 28일까지 도해권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쓰시마번이 언급한 밀무역이다. 1693(元祿6)년에 죽도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일로, 조일간에 발생한 영토문제가 3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로주 아베마사타케(阿部正武)는 전 쓰시마번 번주인 소우요시자네(宗義真)에게 공동 어업을 제의했으나, 요시자네는 이에 분쟁과 밀거래의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면서 밀무역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sup>52)</sup> 양가가 산물을 채취하는 것과 별도로 밀무역을 행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치에몬 역시 17세기의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같은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죽도 도해를 염원했고, 번주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편법적인 도해를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밀무역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 (4) 하치에몬의 밀무역

하치에몬은 죽도가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섬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분명치 않다. 그는 18일 간 4, 50본의 목재와 인삼 15, 6뿌리, 그리고 해산물을 수확하고 귀국했는데, 이 정도의 수익으로 번주와 번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하치에몬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죽도로의 지속적인 도해를 원했다.<sup>53)</sup> 죽도 도해 시 특산물 채취 외

50) 권오엽·오니시편역주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상, 한국학술정보, 2011년, p.175, p.189, p.208.

51) 四代政清徹有院御代明曆三年六月參府, 独禮御目見被爲仰付首尾能相近罷歸。御老中御若年寄御寺社奉行様方勤門左之通進上。物竹島鮑三百入一折宛  
전게서,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0), p.90.

52) 今迄之通双方より罷渡候而者入交候而以来災も出来殊ニ者御法度之商売等も可仕候哉与奉存候以前茂長崎より町人共抜船与申事仕御法度之武具金銀等密ニ朝鮮江持渡商売仕候(중략) 其節之儀ニ而ハ無之候入交候而ハ如何ニ候 전게서, 권정·오니시편역주(2012), pp.190-192.

53) 三兵衛へ爲相知候処同夜同人船中へ罷越嶋方之様子相尋候付細見之始末具ニ相咄莫太有益之地ニ無紛

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었는지, 『텐포잡기』와 『일건기』에 기술되어 있는 밀무역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치에몬의 통칭 콘세이(金清)는 회선을 가업으로 하는 가문을 상징한다. 부친 키요스케는 아호우마루(阿呆丸)로 불리는 대선으로 번의 화물을 운반하던 중 난과되어<sup>54)</sup>, 하치에몬이 그 손실을 죽도산물 채취로 보상하겠다고 하며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에 무기류를 선적하여 죽도에서 이국인에게 밀매했다는 기록이 있다.<sup>55)</sup> 『일건기』에도 이러한 밀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일건기』의 기술에 의하면 하치에몬은 죽도산물의 채취 외에 연공미의 운반, 목재나 일용품의 매매, 철포나 창과 같은 무기류의 매매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sup>56)</sup> 하치에몬은 번의 가신 나라자키(榑崎百八郎)를 찾아가 철포탄, 철포, 화약 등을 받아 선적했는데,<sup>57)</sup> 번의 가신이 죽도로 떠나는 하치에몬에게 무기류를 건네주는 행위는 죽도에서 이루어지는 밀거래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건기』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밀무역을 『텐포잡기』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죽도에 일본의 도검류를 싣고 건너가 이국인과 교역했으며, 도검은 에도 및 여러 곳에서 구입하였고, 운반 시에는 하마다번의 물품이라는 회부를<sup>58)</sup> 사용했다는 것이다.<sup>59)</sup> 에도 등지에서 구입한 무기류를 번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죽도로 운송한 후, 그곳에서 이국인과 거래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죽도도항시말기전』도 일본 도검류 등을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으로 죽도에

候間改而渡海被差免之様頼母方図書方取扱之儀善兵衛俱々申述立(중략) 人参与見込候草三株并海中へ投捨残候材木拾六本有之右之内桑擲取交良材三本頼母方図書方へ相贈候積を以三兵衛方へ善兵衛持来いたし披露之儀相頼猶又聞請之否をも相尋候(24단).

54)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p.2.

55) 亡父清助領主ノ高恩ヲ蒙ル而已ナラス多分ノ拜借金ノ損失ヲ系シテ恐縮懼シ責テ万分ノ一モ其罪ヲ償ハント欲スル事多年因テ其冥加ノ為濱田沖ナル竹島ハ海魚夥シク漁業トシテ渡海免許セラバ年々漁税上納セバ国益ノ一端ナルベシ 吉村昭(2011) 『問宮林蔵』 講談社, p.462.

56) 新潟ニおいて夫々積入直積致出帆候(4단) 当表酒商人ら酒式拾樽積いたし大麻山立木(14단) 積込之酒追々ニ不残売払売代銀を以取続候(15단) 罷登候船中又々賄ニ差詰候ニ付長州赤間関最奇へ上陸名所不存商人店ニ而船中ニ有之鎗銃砲等ニ不用之船具四品取交都合代金壹両ニ売払(25단).

57) 榑崎百八郎方へ夜中窃ニ罷越右之次第相咄シ所望いたし同人所持玉目式匆五分之鉄砲壹挺玉葉相添乞受婦猶又私先代より持傳候鎗之身式穂を研立手元ニ有之細丸立七本を手細工ニ削式本ハ先江鎗之穂を仕込五本ハ同様鎌を仕込素鎗長柄鎌等を取拵其外斧鉞等も取揃不残船中へ差入(19단).

58) 에도시대에 조정·막부·공가(公家)·무가(武家)·사찰(寺社) 등이 물자를 수송할 때, 그 화물의 소속을 명시하기 위해 붙이는 짐표(荷札). 코우리후(行李符)·덴푸(伝符)라고도 한다.

59) 竹嶋ト申嶋濱ハ田料沖合之島ニ而無人島ニ而朝鮮向寄之嶋ニ候所右島ニ而日本之刀劔類を漁獵船ハ積込ニ漁船之姿ニ而異国人ト交易を致候由刀劔ハ江戸并諸方ち買集道中筋ハ濱田用物之会符を用候由 『天保雜記18』 内閣文庫御所蔵

운송하여 이국인과 교역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0)</sup> 『텐포잡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지에서 매입한 무기류에 번의 회부를 부착하여 죽도로 운반한 후, 그곳에서 이국인과 교역한다는 내용이다. 『죽도기사략단』에도 어렵은 명목이고 실제로는 밀상을 주로 하며 도검, 활, 총을 비롯한 물품들을 어선에 싣고 죽도로 건너가 조선인이나 중국인과 밀상한다는 기록이 있다.<sup>61)</sup> 에도 등지에서 구입한 무기류를 번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어선으로 위장한 배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라자키가 건네준 무기류를 죽도로 운반했다는 『일건기』의 내용과 서로 상통한다.<sup>62)</sup>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죽도고증』은 당시의 번주가 피폐한 재정의 해결책으로, 하치에몬의 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해허가를 받은 하치에몬은 번의 회부를 붙여, 번의 물품으로 가장한 물품을 죽도에서 외국인과 밀무역한 죄로 체포된 것이다.<sup>63)</sup>

## 5. 결론

하치에몬은 『일건기』에서 죽도가 조선령인 줄 몰랐고 1833년에 단 한 번만 도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도해원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죽도를 이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작성한 그림 지도의 사본에 3년 연속으로 도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죽도도해의 목적이 산물 채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산물의 채취만으로는 목

60) 濱田領より右竹嶋江押し渡り日本之刀劍の類其外魚漁舟ニ積込漁舟之姿ニ而異国人ト交易いたし候由刀劍ハ江戸并諸国より買集道中ハ濱田用品之絵符を相用候 『朝鮮竹嶋渡航始末記全』 浜田市立図書館御所藏

61) 表ハ漁業ヲ名トシ其實ハ密商ヲ主トシ刀劍弓銃ヲ始其皇國産ノ諸品物ヲ魚漁船ニ積込竹嶋ニ持渡リテ或ハ朝鮮人或ハ支那人ト密商ス其諸品ハ江戸及諸国ヨリ購集ノ道中ハ濱田ノ用品ト唱ヘ同家ノ絵符ヲ証トシニ駆遣ニ附シ運送ス 『竹嶋紀事略單』, 内閣文庫御所藏

62) 榑崎百八郎方ヘ夜中窃ニ罷越右之次第相咄シ所望いたし同人所持玉目式匆五分之鉄砲壹挺玉葉相添乞受婦猶又私先代より持傳候鎗之身式穂を研立手元ニ 有之細丸立七本を手細工ニ削式本ハ先江鎗之穂を仕込五本ハ同様鎌を仕込素鎗長柄鎌等を取拵其外斧鉞等も取揃不殘船中ヘ差入(19단).

63) 当時周防守勝手向疲弊困難の時中り何か良策を愆するの際なれば遂に之を容れ密に同僚松井図書と議し陽に之を制し陰に許の意ありければ八右衛門は我事成れりと確約し漁業を名とし密に刀劍弓銃を始め皇國産の諸品を諸国に購ひ道中ハ濱田の用物と稱し濱田の絵符を付駆遣に附し 遂に之を漁船に移し竹嶋に至るを名として密に外国人と貿易す然るに此事忽ち大坂町奉行矢部駿河守の爲めに発覺し六月十日逮捕鞠審の上其連累一同寺社奉行井上河内守に引渡さる. 바른역사정립기획단(2006)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p.265.

표로 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치에몬 일행이 죽도에 18일간 체류하며 얻은 것은 목재 4, 50본과 약간의 해산물, 그리고 인삼 15, 6개였다. 이마저 난풍으로 바다에 방기하고 하마다에 실질적으로 반입한 것은 재목 16본과 풀뿌리 3개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하치에몬은 죽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도해를 번에 요구했다.

죽도도해의 진 목적은 산물채취가 아니라 밀무역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텐포잡기』, 『죽도기사략단』, 『일건기』 등의 기록에 남아있는 밀무역 관련 기록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건기』에는 밀무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을 뿐, 다른 서적들과 내용이 상통한다.

하치에몬은 밀무역을 통한 이익창출에 확신이 있었고, 때문에 번주는 죽도가 일본의 속지가 아니라는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알면서도, 송도로 도해한다는 미명하에 도해사업을 허한 것이다. 이 도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류로 가장하는 방법까지 교사하고 있다. 하치에몬은 번의 가신이 건네준 무기류를 죽도로 운송하는데, 이는 에도 등지에서 구매한 무기류를 번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으로 운송한다는 『텐포잡기』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죽도도해가 부를 보장한다는 것은 17세기의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장군을 알현하고 막각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기간이 죽도도해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양가는 70여 년간 도해하며 장군을 알현하고 고관들과 교류했으나, 도해가 금지되자 가세가 쇠락하여 그런 교류가 불가능해졌다.

무라카와마사카쓰는 도해 재개를 탄원하다 병을 얻어 낙향했고, 오야카쓰후사 역시 가산을 탕진한 후 급사했다. 죽도도해가 양가의 영고성쇠를 좌우하였는데, 산물의 채취만으로는 그러한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 『텐포잡기』, 『죽도기사략』, 『죽도고증』 등과 같은 기록물이다. 이 서적들은 하치에몬이 어선으로 위장한 배로 에도 등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번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번의 수송제도를 이용해 죽도로 운반하여, 조선인이나 중국인과 밀거래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치에몬이 번주와 번에 약속한 수익은 죽도에서 채취한 산물 뿐 아니라, 밀무역을 통해 얻는 수익 역시 포함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8.  
 \_\_\_\_\_(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 pp.77-80.  
 권오엽·오니시·편역주(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상, 한국학술정보, p.175, p.189, p.208.  
 \_\_\_\_\_(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하, 한국학술정보, p.283.  
 권오엽·편역주(2012) 『죽도지서부』, 대구한의대안용복연구소, p.55, p.77, p.87.  
 \_\_\_\_\_(2012) 『오야가고문서』, 인문사, p.135.  
 권정·오니시·편역주(2012) 『죽도기사』 3-2, 한국학술정보, p.185, pp.190-192.  
 권혁성 역(2013) 『죽도고』, 인문사, p.265, p.287, p.301.  
 권혁성·오니시·편역주(2016) 『장생죽도기』, 제이앤씨, p.75, p.105, p.299.  
 바른역사정립기획단(2006)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p.265.  
 송휘영(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본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日本文化學報』  
 제 6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6.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0) 『竹島関係資料集第一集』, 近代地方文書, p.85, p.90, p.91, p.93.  
 朝尾直弘(2004) 『朝尾直弘著作集』 第5권, 岩波書店, p.202.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p.320.  
 \_\_\_\_\_(2016) 『竹島』, 中公新書, p.107, p.108.  
 川上健三(1996) 『竹島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191.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教育委員会, p.2, p.4.  
 \_\_\_\_\_(2002) 『竹嶋一件考-竹嶋一件の前段階』, 浜田市文化財愛護会編 19号, p.31.  
 \_\_\_\_\_(2014) 『浜田藩と天保竹島一件』, 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 p.5, p.56.  
 吉村昭(2011) 『間宮林蔵』 講談社, p.46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3. 28.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 要 旨 >

『竹嶋渡海一件記全』에あらわれる渡海と密貿易  
—八江戸時代の商人、今津屋右衛門の渡海事業—

権静 · 権五擘

本稿は『竹嶋渡海一件記全』에あらわれる八右衛門의陳述を檢討したものである。八右衛門は1836年12月23日に竹島に渡海した罪に問われ、処刑された人物であるが、彼は本書で事実とは異なる記述をしている。竹島が朝鮮領であっ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した陳述と1833年に一度だけ渡海したとの陳述がそれである。竹島が日本領ではなく幕府によって渡海禁止令がだされた島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も、松島に渡るとの口実の下で藩の輸送制度を使って渡海事業を営んだのである。その背景には浜田藩と藩主の協力があつた。八右衛門は莫大な利益を藩主に約束したが、その利益は単なる特産物の採取で持たされるものではなかつた。本書には藩の家臣から武器類を受け取つたとの記録があるが、武器類の密貿易は当時良く行われていた。本書に密貿易という言葉が直接は使われていないが、同時代の書物である『天保雜記』 · 『竹嶋紀事略單』 · 『竹島考証』に記述されている密貿易の内容と相通する。これらの書籍には八右衛門が江戸などで入手した武器類を竹島に持ち込み中国人や朝鮮人と密かに取引したとの記録がある。八右衛門は密貿易による利益創出に確信を持っており、藩主もその利益を期待したため、幕府の渡海禁止令を知りながらも、松島に渡海するとの嘘の名目で渡海事業を許可したのである。

A smuggling and a sea trader appeared in 『TAKESIMATOKAIKENKI』  
—Hachiemon's marine commerce—

Kwon, Jung · Kwon, O-Yub

This study is a research to examine Hachiemon's statement appeared in 『TAKESIMATOKAIKENKI』. Hachiemon was executed in 1836, because he went over the water to go to Takesima which was forbidden island. He wrote untruth in his book. The fakes are that he didn't know the truth which Takeshima is the terri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he went to the Takeshima just one time at 1833. He and Hamadahana kne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forbade the traffic to the Takeshima. Although knowing the prohibitional law he went to the island under the name of going to the Matushima. The political backing of Hamadahana makes the voyage possible. He promise a large profit. In this book, We can see the description which he got arms from a retainer. A smuggling of arms were popular at that time. The word of smuggling is not appeared in this book, there were similar contents in scontemporary books such as 『Tenpozakki』 · 『Takeshimakijiryakudan』 · 『takeshimakoshow』. There are reports like that Hachiemon secretly trades arms which got from Edo with Chinese and Koreans at Takeshima, Hachiemon and Hamadahana expected a large profit from smuggling. So they knew the prohibition law, Hamadahana allowed Hachiemon sailing to the island under the name of going to the Matushima.